

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

수상레저 사업자	상호(명칭)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:)	
사업장 소재지 (전화번호:)		
명령 사항	수상레저기구·시설 또는 장비의 명칭 및 종류	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
	정비 불량 또는 훼손 내용	
	의무사항	
	시정기한	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 제출기한

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43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령합니다.

※ 위 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해양경찰서장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